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331호

제출년월일 2023. 10. 6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10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(권한 업무의 위임·위탁)
 - 법 제22조제2항.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,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·관리
- 나. 이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숲체험 교육운영 및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김포시 유아숲교육 운영을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: 2024. 03. ~ 2024. 12.

나. 수 탁 자 :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(종합

산림복지업) 또는 산림복지전문업(유이숲교육업)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

다. 위탁방법 : 일반경쟁입찰

라. 위탁내용 : 유아숲 산림교육 위탁운영

마. 위탁사무

- 참여기관 모집·선정 및 운영관리

-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자료작성

- 숲체험 교육 특별 프로그램 또는 행사 기획 및 운영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유아숲 체험 교육운영 및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아숲 교육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검토됨.